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발주 공사에 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일반 건설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계약의 원칙)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,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생략

소관 실·과		건 설 과
입 안 자	과 장	최 규 호
	담 당	김 강 콘
	담 당 자	김 희 호 (480-5355)